

의안번호	2115428
의 퇴 인	김종민의원
회 답 일	2022.06.15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2115428) 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재정수반요인	추계 여부	비고
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(안 제44조의10)	○	
온라인분쟁조사관(안 제44조의12)	○	

II. 비용추계 결과

□ 추가재정소요: 향후 5년간 총 12억 6,000만원, 연평균 2억 5,000만원

[표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3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	연평균
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(안 제44조의10)	1.8	1.8	1.8	1.8	1.8	9	1.8
온라인분쟁조사관 (안 제44조의12)	0.6	0.7	0.7	0.7	0.8	3.6	0.7
합 계	2.5	2.5	2.5	2.5	2.6	12.6	2.5

주: 위원회 참석 인원 및 조사관 채용 인원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2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3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	3
2.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(안 제44조의10)	3
3. 온라인분쟁조사관(안 제44조의12)	4
4. 추계 결과	5

일러두기
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2억 4,800만원, 2027년 2억 5,6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억 6,100만원(연평균 2억 5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3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	연평균
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(안 제44조의10)	180	180	180	180	180	900	180
온라인분쟁조사관 (안 제44조의12)	68	70	72	74	76	361	72
합 계	248	250	252	254	256	1,261	252

주: 위원회 참석 인원 및 조사관 채용 인원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□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(안 제44조의10)

-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둔(제1항)
-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되, 각 분야별로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함(제2항)
 - 1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 - 2. 언론인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
 - 3. 그 밖에 온라인분쟁조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

위촉함(제3항)

-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(제5항)
- 그 밖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8항)

□ 온라인분쟁조사관(안 제44조의12 신설)

-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건 중 의견 조정이 어려운 사안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온라인분쟁조사관(이하 “조사관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음(제1항)
- 조사관은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, 허위조작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정 및 소송 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(제2항)
- 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함(제3항)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-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(안 제44조의10)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존의 ‘명예훼손분쟁조정부’ 대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‘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’ 설치에 따른 위원회 개최 비용임
- 온라인분쟁조사관 채용(안 제44조의12 신설)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조사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임
 - 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일반임기제공무원 5호(5급 상당) 1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
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

- 추계 대상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과 온라인분쟁조사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임

<비용추계 산식>

$$\text{추가재정소요} = \sum_{t=2023}^{2027} \text{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비용}^{1)}_t + \text{온라인분쟁조사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}^{2)}_t$$

이때, t 는 추계기간(2023~2027년)

1)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비용

- 위원회 참석 수당 산출을 위해 회의 참석 인원 25인, 연간 24회 개최(월 2회×12회), 참석 수당 30만원으로 가정
- 25인 × 24회 × 30만원 = 연간 1억 8천만원 (2023년~2027년)

2) 온라인분쟁조사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

-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제5호 1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
- 2022년 공무원보수등업무지침의 계급별 연봉한계액을 참고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 제5호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값인 6,600만원을 온라인분쟁조사관의 인건비로 산출
- 이 값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¹⁾

2.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(안 제44조의10)

- 안 제44조의10에 따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개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(참석 인원)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분쟁위원회는 30~50명의 위원으로 구성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

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
명목임금상승률	3.5	3.3	3.1	2.9	2.8	3.0

(단위: %)

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참석 민간위원은 50명의 1/2인 25인으로 가정

- (회의 개최 횟수) 연 24회(월 2회× 12회)로 가정
- (참석 수당) 향후 위원회 개최시 소요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건당 20만원 및 안전검토사례비 5만원, 회의운영비 5만원 즉, 위원 1인당 30만원²⁾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
→ 25인 × 24회 × 30만원 = 연간 1억 8천만원 (2023년~2027년)

□ 안 제44조의10에 따라 온라인분쟁위원회 설치시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3~2027년
(단위: 백만원)

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(안 제44조의10)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	연평균
온라인분쟁위원회 개최 비용	180	180	180	180	180	900	180

주: 위원회 참석 인원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
자료: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3. 온라인분쟁조사관(안 제44조의12 신설)

□ 안 제44조의12 신설에 따라 온라인분쟁조사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재정소요로 예상됨

-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제5호(5급 상당) 1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- 2022년 공무원보수등업무지침의 계급별 연봉한계액을 참고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 제5호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값인 6,600만원을 온라인분쟁조사관의 인건비로 산출
 - 이 값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

2)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(기획재정부, 「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)

[표 3] 일반임기제공무원 제5호 연봉한계액

(단위: 천원)

	상한액	하한액	평균
일반임기제공무원 제5호	84,408	47,976	66,192

주: 2022년 공무원보수등업무지침의 계급별 연봉한계액 (p.167)

- 안 제44조의12 신설에 따라 온라인분쟁조사관 채용시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

[표 4] 온라인분쟁조사관 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3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온라인분쟁조사관 (안 제44조의12)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	연평균
온라인분쟁조사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	68	70	72	74	76	361	72

주: 온라인분쟁조사관 채용 인원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4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2억 4,800만원, 2027년 2억 5,6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억 6,100만원(연평균 2억 5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3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	연평균
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(안 제44조의10)	180	180	180	180	180	900	180
온라인분쟁조사관 (안 제44조의12)	68	70	72	74	76	361	72
합 계	248	250	252	254	256	1,261	252

주: 위원회 참석 인원 및 조사관 채용 인원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국회예산정책처	경제비용추계과
과장	이현경
추계세제분석관	지수현
연락처	02-6788-3735
	zisu37@na.go.kr
